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07714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협정안의 개요	4
2. 국회 비준동의 사유	4
3. 주요 내용 검토	6
4. 종합의견	15
※ 참고자료	17
1. 우리나라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17
2. 바레인 개황자료	20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일자 : 2025년 1월 22일
3. 회부일자 : 2025년 1월 2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도록 함(안 제 2조).

나.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투자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

자자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각 계약당사자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비차별적 방식으로,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적법 절차에 따르는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각 계약당사자는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금을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함(안 제6조).

마.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가능하면 협의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되, 분쟁 해결 요청일부터 180일 내에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임시 중재판정부에 회부되도록 함(안 제10조).

바. 한쪽 계약당사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 분쟁은 가능하면 교섭이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서면으로 제기된 날부터 180일 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 투자자가 분쟁을 분쟁당사자인 계약당사자의 국내 구제절차 또는 각종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체결경위

- 2014. 7. 문안 교섭 개시
- 2022. 12. 최종 문안 합의
- 2023. 10. 17. 제43회 국무회의 심의
- 2024. 12. 26. 서명(마나마)

Ⅲ. 검토의견

1. 협정안의 개요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이하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이라 함)은 양국 간에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국회 비준동의 사유

동 협정안 제5조제1항¹⁾은 i) 공공목적, ii) 비차별적 방식, iii)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의 지급, iv) 적법절차와 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 준수, 이상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가 상대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를 국유화 또는 수용(직접수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간접수용)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 수용 시 보상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살펴보면, 직접수용 시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1) 제5조 수용과 보상

1. 어느 계약당사자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이하 “수용”이라 한다)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급할 것, 그리고

라. 국제관습법에 따라 양해되는 적법 절차와 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에 따를 것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일반적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데 비해, 간접수용 시 보상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²⁾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간접수용 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동 협정안이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³⁾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참고로, 간접수용은 과거 체결된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정부는 제19대 국회 이전까지는 이를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외적인 경우(한·독 투자보장협정, 한·일 투자협정)⁴⁾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그러나 제19대 국회부터는 법리(法理)해석을 달리하여 투자보장협정의 간접수용 관련 규정이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보고

2) 예컨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의 효용 감소 등의 경우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간접수용에 관한 개별 법률은 있으나, 간접수용 시 보상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국내 법률은 없음.

3)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4) ▶ 「**한·독 투자보장협정**」(1967년 발효)의 경우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1964. 5.)에는 동 협정이 당시 헌법 제56조에 해당하여 국회 동의를 필요한 것으로 명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한·일 투자협정**」(2003년 발효)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과는 달리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특례 등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투자 자유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음.

있는바, 간접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투자보장협정과 그렇지 않은 우리 국내법 체계 간에 차이가 있고, 간접수용의 법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개별 법률과도 보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보장협정의 간접수용 관련 규정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3. 주요 내용 검토

가.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3조 투자의 대우 1.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의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이하 “내국민대우”라 한다)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이하 “최혜국대우”라 한다)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들의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	Article 3 Treatment of Investments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in its territory to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their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tional treatment”) or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in its territory to invest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their investments, treatment n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리하지 않은 대우(내국민대우)나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of its own investors (national treatment) or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협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각 계약당사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상대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및 ‘상대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자국 투자자’ 및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내국민대우)나 ‘제3국 투자자’ 및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란 외국투자자에 대해 동종의 상황(like circumstances) 하에서 내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말하며,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란 동종의 상황에 있는(like circumstances)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로서, 다른 협정에서 동종의 상황에 있는 제3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이 협정 당사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도 그러한 추가적 혜택이 부

여된다는 것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바레인에 대한 투자규모⁵⁾는 2023년 기준으로 2억 8,000만 달러 정도로, 바레인에는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분야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진출 관문으로서의 입지, 역내 금융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이점 등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협정안을 통해 양국 간 투자에 대해 상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가 부여될 경우, 향후 우리 기업들이 바레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수용 및 보상 (안 제5조제1항)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5조 수용과 보상⁵⁾ 1. 어느 계약당사자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이하 “수용”이라 한다)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급할 것, 그리고 라. 국제관습법에 따라 양해되는 적법 절차	Article 5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⁵⁾ 1. Neither Contracting Party may expropriate or nationalize an investment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measures equivalent to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ropriation”), except: (a) for a public purpose; (b)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c) on payment of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and (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5) ※ 한-바레인 경제관계 현황

- 교역 : 6.5억불('23년, 한국무역협회)
 - 수출 : 1.5억불(자동차, 전력용기기 등)
 - 수입 : 4.9억불(나프타, 알루미늄 등)
- 투자 : 한→바레인 : 2.8억불 / 바레인→한 : 1.6억불 ('23년, 누계 신고기준)
- 삼성 ENG 등 우리 기업 9개 진출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와 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에 따를 것	and Article 2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as they are understoo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협정안 제5조제1항은 i) 공공목적, ii) 비차별적 방식, iii)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급할 것, iv) 적법절차와 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 준수, 이상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가 상대 계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를 국유화 또는 수용(직접수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간접수용⁶⁾)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대다수의 투자보장협정은 간접수용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수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수용에 대한 규정방식은 투자협정마다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크게 i) 국가의 규제권한을 존중하는 방식, ii)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 iii) 부속서(Annex)를 두는 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동 협정안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어 발효된 ‘한-아르메니아 투자보장협정(2019.10.3. 발효)’,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2018.10.31. 발효)’ 등과 같이 간접수용에서 제외되는 정부조치의 유형을 예시한 별도의 부속서를 두고 있음.

6) 소유권 이전 없이도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로서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보는 것임.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부속서 I 수용 3. 제5조(수용과 보상)에서 다룬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 한쪽 계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명의의 공식적이전이나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한쪽 계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와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조치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한쪽 계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 2) 정부 조치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⁷⁾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 조치의 성격. 관련 고려 사항은 정부 조치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하는지의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 나. 예를 들어,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과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	Annex I Expropriation 3. The second situation addressed by Article 5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is indirect expropriation, where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Contracting Party has an effect equivalent to direct expropriation without formal transfer of title or outright seizure. (a)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Contracting Party,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constitutes an indirect expropriation, requires a case-by-case, fact-based inquiry that considers all relevant factors relating to the investment, including: (i) the economic impact of the government action, although the fact that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Contracting Party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economic value of an investment, standing alone, does not establish that an indirect expropriation has occurred; (ii)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action interferes with distinct,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and (iii)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ction, including its objectives and context. Relevant considerations could include whether the government action imposes a special sacrifice on the particular investor or investment that exceeds what the investor or investment should be expected to endure for the public interest. (b)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such as, for example, when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is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 in light of its purpose or effect, non-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by a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비차별적인 규제 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Contracting Party that are designed and appli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welfare objectives, such as public health, safety, the environment, and real estate price stabilization (through, for example, measures to improve the housing conditions for low-income households), do not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s.

동 협정안의 부속서 I (Annex I) 제3항에서는 간접수용을 “한쪽 계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이나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로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판단은 i) 정부 조치의 경제적 영향, ii) 정부 조치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iii)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 조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계약당사자의 비차별적인 규제 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하면서, 공중보건, 안전, 환경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 조치를 예로 들어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간접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없는 상황인바, 간접수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의 여부는 부분적으로 관련 부문에서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규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심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용과 관련하여 향후 중재재판부에 회부되었을 때 동 규정이 명확한 판정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방식은 타당하다고 보임.

다. 한쪽 계약당사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 분쟁 해결 (안 제11조)

협정안 제11조제2항은 국가 및 다른 국가의 국민 간의 투자분쟁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음. 이용 가능한 중재 기관·절차로는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⁸⁾, ICSID 추가절차규칙⁹⁾, UNCITRAL 중재규칙¹⁰⁾과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對 바레인 투자 규모가 바레인의 우리에게 대한 투자 규모보다 크고, 바레인 정부가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바레인의 국내법원 보다는 ICSID 절차를 따르는 것이 재판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강화되어 바레인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ICSID협약”이란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을 말하는바, World Bank 산하 기구인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우리나라와 바레인 포함)에게 ISDS 절차를 제공함.

9) ICSID 추가절차규칙: 양국 중 일방이 ‘ICSID협약’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동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국제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위원회인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을 말함.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1조 한쪽 계약당사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2. 그러한 분쟁은 가능하면 교섭 또는 협의로 해결한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 요청으로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180일 내에 교섭 또는 협의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이 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해결을 위하여 분쟁을 다음에 회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인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나. 이 조에 따라 다음에 따른 중재 1)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이 적용 가능한 경우, ICSID 협약 2)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의 추가절차규칙(“ICSID 추가절차규칙”)이 이용 가능한 경우, ICSID 추가절차규칙 3) 2010년에 개정된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UNCITRAL 중재규칙”), 또는 4) 양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	Article 11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Such a dispute should, if possible, be settled by negotiations or consultations. If it is not so settled within one hundred and eighty (18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has been raised with written request by either party, the investor may choose to submit it for resolution, subject to paragraphs 6, 7, and 8 of this Article: (a) to any competent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the Contracting Party which is party to the dispute; (b)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under: (i)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the “ICSID Convention”), if the ICSID Convention is available; (ii) the Additional Facility Rul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if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are available; (iii)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as revised in 2010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iv) if agreed by both parties to the dispute,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 or any other arbitration rules.

라. 혜택의 부인 (안 제15조)

협정안 제15조는 비체약당사자의 인(人)이 직·간접적으로 상대 체약당사자의 법인을 소유·지배하는 경우 및 상대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그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협정안에 따른 혜택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문 협정문	영문 협정문
제15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체약당사자는, 비체약당사자의 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혜택을 부인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법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협정의 혜택이 그 법인이나 그 법인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될 수 있거나 우회될 수 있는 조치를 그 비체약당사자 또는 그 비체약당사자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법인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Article 15 Denial of Benefits 1. A Contracting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to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is a juridical person of such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persons of a non-Contracting Party, directly or indirectly, own or control the juridical person and the denying Contracting Party adopts or maintains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non-Contracting Party or a person of the non-Contracting Party that prohibit transactions with the juridical person or that would be violated or circumvented if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were accorded to the juridical person or its investments. 2. A Contracting Party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Agreement to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is a juridical person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o investments of that investor if the juridical person has no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이와 같은 규정은 투자목적회사 또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설립 등을 통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국 기업이 동 협정상의 혜택을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단순히 협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를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다국적 기업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제3국 자본이 협정을 악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혜택의 부인’ 규정을 동 협정안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4. 종합의견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안은 양국 간에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규정, 투자분쟁 해결,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국 기업에 대한 동 협정상의 혜택 부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협정은 한-바레인 간 경제·교역·투자 협력 관계 강화, 우리 기업들의 바레인 진출 및 바레인을 교두보로 한 중동 진출 확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對바레인 투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촉진 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우리나라가 바레인에 대해 투자진출국인 점, 바레인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바레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66

【참고자료 1】 우리나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2025년 2월 현재 총 101개국 체결
발효 83개국, 종료 12개국(이 중 11개는 FTA 발효로 종료), 미발효 6개국

	지 역 (체결)	국 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 고
1	구주 지역 (35)	독일	1964.2.4.	1967.1.15.	
2		스위스	1971.4.7.	1971.4.7.	2006.9.1. 종료 한-EFTA FTA로 대체 (2006.9.1. 발효)
3		영국	1976.3.4.	1976.3.4.	
4		프랑스	1977.12.28.	1979.2.1.	
5		덴마크	1988.6.2.	1988.6.2.	
6		헝가리	1988.12.28.	1989.1.1.	
7		이탈리아	1989.1.10.	1992.6.26.	
8		폴란드	1989.11.1.	1990.2.2.	
9		러시아	1990.12.14.	1991.7.10.	
10		오스트리아	1991.3.14.	1991.11.1.	
11		터키	1991.5.14.	1994.6.4.	2018.8.1. 종료 한-터키 FTA로 대체 (2013.5.1. 발효)
12		체코	1992.4.27.	1995.3.16.	
13		우즈베키스탄	1992.6.17.	1992.11.20.	
			2019.4.19.	2023.4.5.	
14		리투아니아	1993.9.24.	1993.11.9.	
15		핀란드	1993.10.21.	1996.5.11.	
16		스페인	1994.1.17.	1994.7.19.	
17		그리스	1995.1.25.	1995.11.4.	
18		포르투갈	1995.5.3.	1996.8.11.	
19		타지키스탄	1995.7.14.	1995.8.13.	
20		스웨덴	1995.8.30.	1997.6.18.	
21		카자흐스탄	1996.3.20.	1996.12.26.	
22		라트비아	1996.10.23.	1997.1.26.	
23		우크라이나	1996.12.16.	1997.11.3.	
24		벨라루스	1997.4.22.	1997.8.9.	
25		네덜란드	1974.10.16.	1975.6.1.	개정
			2003.7.12.	2005.3.1.	
26		알바니아	2003.12.15.	2006.5.18.	
27		슬로바키아	2005.5.27.	2006.2.7.	
28		크로아티아	2005.7.19.	2006.5.31.	
29		불가리아	2006.6.12.	2006.11.16.	
30		루마니아	1990.8.7.	1994.12.30.	개정
			2006.9.6.	2008.1.11.	
31		아제르바이잔	2007.4.23.	2008.1.25.	
32		키르기즈스탄	2007.11.19.	2008.7.8.	
33	벨기에 · 룩셈부르크	1974.12.20.	1976.9.3.	개정	
		2006.12.12.	2011.3.27.		
34	아르메니아	2018.10.19.	2019.10.3.		
35	세르비아	2023.9.8.	-		

	지 역 (체결)	국 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 고
36	아시아 지역 (18)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는 BIT 없이 FTA만 존재	스리랑카	1980.3.28.	1980.7.15.	
37		방글라데시	1986.6.18.	1988.10.6.	
38		말레이시아	1988.4.11.	1989.3.31.	
39		파키스탄	1988.5.25.	1990.4.15.	
40		태국	1989.3.24.	1989.9.30.	
41		인도네시아	1991.2.16.	1994.3.10.	
42		몽골	1991.3.28.	1991.4.30.	
43		필리핀	1994.4.7.	1996.9.25.	
44		인도	1996.2.26.	1996.5.7.	2017.5.12. 종료 한-인도 CEPA로 일원화 (2010.1.1. 발효)
45		라오스	1996.5.15.	1996.6.14.	
46		캄보디아	1997.2.10.	1997.3.12.	
47		홍콩	1997.6.30.	1997.7.30.	
48		브루나이	2000.11.14.	2003.10.30.	
49		일본	2002.3.22.	2003.1.1.	
50		베트남	1993.5.13.	1993.9.4.	
			2003.9.15.	2004.6.5.	
51		중국	1992.9.30.	1992.12.4.	개정
			2007.9.8.	2007.12.1.	
52		한·중·일	2012.5.13.	2014.5.17.	
53		미얀마	2014.6.5.	2018.10.31.	
54	아프리카- 중동지역 (29개)	튀니지	1975.5.23.	1975.11.28.	
55		세네갈	1984.7.12.	1985.9.2.	
56		남아공	1995.7.7.	1997.6.6.	
57		이집트	1996.3.18.	1997.5.25.	
58		나이지리아	1998.3.27.	1999.2.1.	
59		이란	1998.10.31.	2006.3.31.	
60		탄자니아	1998.12.18.	-	
61		모로코	1999.1.27.	2001.5.8.	
62		이스라엘	1999.2.7.	2003.6.19.	2022.12.1 종료 한-이스라엘 FTA로 대체 (2022.12.1. 발효)
63		카타르	1999.4.16.	1999.5.16.	
64		알제리	1999.10.12.	2001.9.30.	
65		사우디아라비아	2002.4.4.	2003.2.19.	
66		아랍에미리트	2002.6.9.	2004.6.15.	
67		오만	2003.10.8.	2004.2.10.	
68		쿠웨이트	2004.7.15.	2007.8.31.	
69		요르단	2004.7.24.	2004.12.25.	
70		부르키나파소	2004.10.26.	2010.4.14.	

	지 역 (체결)	국 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 고
71		모리타니아	2004.12.15.	2006.7.21.	
72		콩고민주공화국	2005.3.17.	-	
73		레바논	2006.5.5.	2006.12.21.	
74		리비아	2006.9.21.	2007.3.28.	
75		콩고공화국	2006.11.8.	2011.8.13.	
76		모리셔스	2007.6.18.	2008.3.7.	
77		가봉	2007.8.10.	2009.8.9.	
78		르완다	2009.5.29.	2013.2.16.	
79		짐바브웨	2010.5.24.	2021.4.7	
80		카메룬	2013.12.24.	2018.4.13.	
81		케냐	2014.7.8.	2017.5.3.	
82		바레인	2024.12.26	-	
83	미주 지역 (19개) *미국, 캐나다 BIT없이 FTA만 존재	파라과이	1992.12.22.	1993.8.6.	
84		페루	1993.6.3.	1994.4.20.	2011.8.1. 종료 한-페루 FTA로 대체 (2011.8.1. 발효)
85		아르헨티나	1994.5.17.	1996.9.24.	
86		브라질	1995.9.1.	-	
87		볼리비아	1996.4.1.	1997.6.4.	2019.6.4. 종료
88		칠레	1996.9.6.	1999.9.16.	2004.4.1. 종료 한-칠레 FTA로 대체 (2004.4.1. 발효)
89		엘살바도르	1998.7.6.	2002.5.25.	2020.1.1. 종료 한-중미 FTA로 대체 (2020.1.1. 발효)
90		니카라과	2000.5.15.	2001.6.22.	2019.10.1. 종료 한-중미 FTA로 대체 (2019.10.1. 발효)
91		과테말라	2000.8.1.	2002.8.17.	
92		코스타리카	2000.8.11.	2002.8.25.	2019.11.1. 종료 한-중미 FTA로 대체 (2019.11.1. 발효)
93		온두라스	2000.10.24.	2001.7.19.	2019.10.1. 종료 한-중미 FTA로 대체 (2019.10.1. 발효)
94		멕시코	2000.11.14.	2002.6.27.	
95		파나마	2001.7.10.	2002.2.8.	2021.3.1. 종료 한-중미 FTA로 대체
96		트리니다드토바고	2002.11.5.	2003.11.27.	
97		자메이카	2003.6.10.	2007.11.5.	
98		도미니카	2006.6.30.	2008.6.10.	
99		가이아나	2006.7.31.	2006.8.20.	
100		우루과이	2009.10.1.	2011.12.8.	
101		콜롬비아	2010.7.6.	-	

【참고자료 2】 바레인 약황자료

□ 일반사항

- 수 도 : 마나마(Manama)
- 인 구 : 158만명('23, IMF)
- 면 적 : 785.6km²(서울의 약 1.3배)
- 언 어 : 아랍어(영어도 통용)
- 종 교 : 이슬람교 70%(수니파 40%, 시아파 60%), 기타 기독교 및 힌두교 등 17%
- 독 립 : 1971.8.15.(영국으로부터 독립)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국왕 중심의 입헌군주제
- 의 회
 - 상원(임명제, 의원 40인, 임기 4년)
 - 하원(선출제, 의원 40인, 임기 4년)
- 주요인사
 - 국왕 :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His Majesty Hamad bin Isa Al Khalifa)
 - 총리 겸 왕세자 : 살만 빈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His Royal Highness Salman bin Hamad bin Isa Al Khalifa)
 - 외교장관 :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 (Abdullatif bin Rashid Al Zayani)

□ 경제현황

- 명목GDP : 432억불 ('23. WB)
- 1인당 명목GDP : 29,084불 ('23. WB)
- 경제성장률 : 2.4% ('23, 바레인 재정경제부)
- 교역규모 : 451억불 ('23, 바레인 재정경제부)
 - 수출 : 248억불(알루미늄, 석유화학 제품)
 - 수입 : 203억불(원유, 기계류, 화학제품)
- 화폐 : 바레인 디나르(BHD) / 1US\$=0.376BHD (고정환율)
- 주요자원
 - 원유(1.24억 배럴, '22, 미 국제무역청), 천연가스, 어류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76.4.17.
- 공관현황
 - 우리측 : 2011년 주바레인대사관 재개관, 2023.05. 구헌상 대사 부임
 - 바레인 :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현재 주한대사관 신설 추진중)
- 양국간 교역규모 : 6.5억불('23, 한국무역협회)
 - 수출 : 1.5억불(자동차, 전력용기기 외)
 - 수입 : 4.9억불(나프타, 알루미늄 외)
- 건설수주('65~'23 누계) : 57건, 59억불
- 투자 및 기업진출현황('23, 누계 신고기준)
 - 투자 : 한→바레인 : 2.8억불
바레인→한 : 1.6억불
 - 기업 : 삼성 ENG 등 9개 업체 진출
- 교민현황 : 약 200명('23)
- 주요인사 교류
 - 방문
 - 13.08 정홍원 국무총리
 - 15.03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한기호, 김광진)

- 17.06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17.09 양한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18.0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8.06 김종진 문화재청장
- 18.11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 19.01 국회 대표단(이정현, 우원식, 유재중 등)
- 19.12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 20.12 강경화 외교부 장관
- 21.02 박병석 국회의장
- 23.03 한승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
- 23.03 국회 대표단(박용진, 오기형, 양이원영 등)
- 24.01 한-바 의원친선협회(권은희, 윤주경)

- 방한

- 12.05 Salman 바레인 왕세자
- 12.09 Kahalifa 해군사령관
- 13.05 Rashed 내무부 장관
- 13.11 Abdulrahman 인권 장관
- 15.05 Majed 교육부 장관
- 15.11 Ahmed 관세청장
- 16.10 Mohammed 보건최고위 의장
- 17.12 Mohammed 석유부 장관
- 17.09 Ahmed 하원의장
- 17.09 Mohammed 보건최고위 의장(3-9월)
- 18.04 Faeqa 보건장관(2-4월)
- 18.05 Mai 문화유물청장
- 18.12 Mohammed 보건최고위 의장(2-4-12월)
- 19.12 Ahmed 관세청장
- 21.06 Mai 문화유물청장
- 21.08 Fawzia 하원의장
- 23.05 Abdulla 산업통상부장관
- 23.05 Noor 지속가능개발부장관

○ 협의체 현황

- 정책협의회 : 제4차 한-바레인 정책협의회 (2022.04. 서울)

□ 북한과의 관계

- 수교일자 : 2001.5.23.
- 주쿠웨이트 북한대사가 바레인 겸임

□ 최근 주요 정세

- 바레인은 시아파가 전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수니파의 왕가가 장기 통치하고 국가의 핵심 요직 장악
- 16년 주이란사우디대사관에 대한 공격 이후 사우디와 함께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 선언
- 16년 최대 야권 단체 알위파크 폐쇄로 야권세력 약화
- 18년 제5대 총선 시행 이후 정국 안정화
- 20.09월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체결 및 관계 정상화
- 21.01월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 GCC 정상회의에서 바레인 포함 아랍4개국, 카타르와 관계 정상화 합의 (23.04월 바-카타르간 관계 정상화 결정)
- 23.09월 바-미국간 '포괄적 안보통합 및 번영 협정' 체결
- 24.06월 바-이란간 정치관계 재개를 위한 대화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 등 양국관계 개선 추진중